

##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최훈석\*      박은영  
성균관대학교

응보(retribution), 일반인 제지(general deterrence), 및 무력화(incapacitation)를 중심으로 처벌의 근본 목적을 탐색하고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개의 실험 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1에서는 범죄 사건의 응보 관련 요소와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를 변화시켜 처벌 대상자에 대한 참가자들의 처벌 판단을 비교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처벌 판단은 범죄 사건의 응보 관련 요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으며,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범죄 사건의 응보 관련 요소와 무력화 관련 요소들을 변화시켜 참가자들의 처벌 판단을 비교했다.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처벌 판단은 응보 관련 요소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력화 관련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 받았다. 실험 3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그리고 무력화 관련 요소들을 단일 설계에 모두 포함시켜 실험 1과 2의 결과를 반복검증하였다. 또한 응보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은 범죄 사건으로부터 판단자가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되며,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은 범죄 행위자에 대한 범죄 성향 지각과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에 의해서 매개됨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장래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처벌 목적, 응보, 공리주의, 일반인 제지, 무력화, 처벌 판단

처벌은 “법률이나 규칙, 규범, 또는 기대를 위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해지는 부정 제재”(Vidmar & Miller, 1980, p.568)를 의미하며, 가족, 집단, 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처벌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처벌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처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가 모두 실증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처벌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처벌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처벌 판단을 결정하는 선행 영향 요인, 처벌 판단의 정보처리 과정, 배심단의 집단 역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참조: 고재홍, 1991, 1995, 1996; 박광배, 2004; Alicke, 2000; Austin, Walster, & Utne, 1976; Ellsworth & Mauro, 1998; Tindale, Nadler, Krebel, & Davis, 2000; Vidmar & Miller, 1980; Weiner, 1995).

\* 본 논문의 실험 1과 2에 보고된 자료는 교신저자의 지도로 수행된 박은영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이다.

+ 교신저자 : 최훈석,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760-0494,

E-mail : hchoi@skku.edu

처벌에 관한 기존 연구가 처벌에 관한 과학적 이해에 기여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처벌의 결과, 처벌 판단에 수반되는 정보처리, 그리고 처벌 크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처벌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에 대한 답은 제공하지 못한다(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Darley, Carlsmith, & Robinson, 2000; Vidmar & Miller, 1980). 아직까지 처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처벌의 근본 목적을 밝히려는 연구는 일부 예외(예 :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1982)를 제외하고는 시도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적 범죄 사건을 활용하여 각기 다른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추이를 비교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처벌 목적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했다.

#### 처벌의 목적 분류 : 응보 대 공리주의

처벌의 목적에 관한 개인의 철학은 범법자나 규칙위반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재홍, 1995; Carlsmith et al., 2002; McFatter, 1978; Vidmar & Miller, 1980). 처벌의 근본 목적에 관한 철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의 논의는 크게 응보(retribution)와 공리주의(utilitarianism)로 대분된다. 응보 관점은 Kant의 도덕 철학에 근원을 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처벌의 목적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잘못된 바를 교정하는데 있다. 따라서, 처벌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며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처벌의 크기는 반드시 초래된 피해의 크기에 비례해야 한다. 반면에 Bentham의 형벌이론에 근원을 둔 공리주의 관점에 따르면, 처벌의 목적은 현재의 잘못을 교정하기 보다는 미래의 선(善)을 담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처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처벌의 크기는 현재 발생한 피해 크기가 아닌 장래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지에 따라서 결정된다(Darley et al., 2000).

판단자가 지니는 처벌 목적과 처벌 판단 간의 관계를 다룬 심리학 연구에서도 응보와 공리주의 처벌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McFatter(1982)는 Hograth (1971)의 처벌 철학 분류에 근거하여 범법자에 대한 처벌 상황에서 주로 발견되는 다섯 가지 처벌 목적을 구분한다. 응보는 범법자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반인 제지(general deterrence)는 범법자를 벌함으로써 일반 대중 가운데 잠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정인 제지(special deterrence)는 범법자 본인으로 하여금 처벌이 무서워서 다시는 재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력화(incapacitation)는 주로 감금을 통해 범법자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갱생(rehabilitation)은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 절차를 통해 범법자를 교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인 제지, 특정인 제지, 무력화, 및 갱생은 처벌을 통해서 미래 범죄 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리주의적 처벌 목적을 반영한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일반인 제지와 특정인 제지는 모두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기준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기도 한다(예 : 고재홍, 1995; Vidmar & Miller, 198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arlsmith와 동료 연구자들(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은 McFatter(1982)의 5범주 분류와 달리,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를 형사 사건 장면에서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처벌의 기본 목적으로 제안한다. 이 연구자들은 범법 행위자의 재범을 제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 제지와 무력화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처럼 처벌의 목적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처벌 판단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차원은 응보와 공리주의(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이다. 이 두 가지 처벌 목적은 법학의 형벌 이론에서 가정하는 본원적 처벌 목적과 일관되며(참조 : 김일수, 배종대, 1998; 한정환, 1998, 1999), 범조인, 법철학자, 및 일반인 모두에게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Carlsmith et al., 2002; McFatter, 1978, 198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벌 목적을 응보와 공리주의로 구분하고, 공리주의 목적 가운데 일

반인 제지와 무력화를 세분하여 이 세 가지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을 비교하고자 한다. 일반인 제지와 무력화는 모두 제범 방지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동일한 범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중에 대한 제지에 초점을 둔 일반인 제지와 규칙이나 법률 위반자의 제범 제지에 초점을 둔 무력화의 심리적 기제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이 둘을 구분하여 다루며, 그 근거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에 따른 구분은 처벌의 근본 목적을 다룬 최근의 연구 추세(예 :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와도 일관된다.

### 응보와 공리주의 처벌 목적의 핵심 요소

응보 관점에서 볼 때 처벌의 본질은 위반 행위에 대한 보복의 일종이다. 반면에,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일반인이나(일반인 제지) 행위자가(무력화) 장래에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지하는데 처벌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응보와 공리주의는 각각 형평 회복과 제범 방지 목적을 반영하며(고재홍, 1995; 박광배, 2004), 전자는 과거지향적 그리고 후자는 미래지향적 특징을 지닌다(Carlsmith et al., 2002). 아래에서는 범죄자 처벌 상황에 초점을 두고 범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서의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의 핵심 구성요소 및 각각의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심리적 기제, 그리고 이 세 가지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을 비교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응보

응보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크기, 행위자의 의도성, 그리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의 존재이다(참조 :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Roberts & Gebotys, 1989; Vidmar & Miller, 1980). 범죄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크기는 통상 범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지각되며(예 : 단순 폭행 대 살인), 해당 범법 행위의 심각성에 관한 지표가 된다. 의도성은 범법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은 범법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응보 원칙은 도덕적 비율성(moral proportionality) 원리, 즉 처벌의 크기는 범죄자가 초래한 도덕적 위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원리를 반영한다(Carlsmith, 2006). 따라서 판단자가 응보 관점에서 처벌 판단을 내릴 경우 범죄 행위가 초래한 피해가 크다고 지각될수록, 고의로 범법 행위를 했다고 지각될수록, 그리고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각될수록 범죄자에 대해서 내려진 처벌 크기가 크다.<sup>1)</sup>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보 관련 요소들에 따라서 처벌 판단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결과가 반복해서 관찰되었다. 먼저, 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클수록 범죄자에게 부과된 처벌 크기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예 : 고재홍, 1995; Hamilton & Rytina, 1980; McFatter, 1978; Rosen & Jerdee, 1974; Walster, 1996; Warr, Meier, & Erickson, 1983). 이는 응보 관련 요소인 피해 크기가 처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피해 크기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다. 형평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범죄 심각성은 투입에 그리고 처벌 강도는 산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응보 목적을 따르는 것은 범죄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형평을 보전하는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Austin et al., 1976; Hamilton & Rytina, 1980). 또한 피해 크기와 처벌 크기 간의 정적 관계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Lerner, 2003) 과도 관련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는 범죄자에 대한 ‘벌 받을 만함’(deservingness) 지각이다. 그런데 사람들

1) 응보 원칙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예 : 참회 여부)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처벌 판단에 실제로 사용되는 정도 및 제지주의와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응보 목적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 또한 의도성과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에 대한 지각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의도성이 높게 지각되는 범법 상황이 흔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은 별개의 요소로 취급한다(참조 :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은 통상 세상이 누구나 받을 만한 결과를 받는 공정한 곳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응보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믿음을 구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 Feather, 1999).<sup>2)</sup>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의 존재와 의도성이 처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참조 : Alicke, 2000). 예를 들어, Feather와 Deverson(2000)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 가운데 하나인 길이 미끄러웠다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했다. 이 결과는 행위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처벌 판단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Heider(1958)에 의해서 시작된 책임 판단 연구에 의하면, 특정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 내부 요인으로 보는지 혹은 상황 요인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 대한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장면에서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범죄 행위의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인하게 되고,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 비해서 낮은 강도의 처벌을 유발한다.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의 존재가 주로 귀인의 소재(내부/외부) 차원과 관련된다면, 범죄자의 의도성은 귀인의 통제가능성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yna & Weiner, 2001; Weiner, 1995; Weiner, Graham, & Reyna, 1997). 즉, 행위자가 분명한 의도를 지니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행동의 통제가능성이 높게 지각되고, 그에 따라서 범죄 행위에 부과되는 처벌 강도도 높다. 또한 의도성은 현대 형법체계에서 범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참조 : 법원행정처, 1999).

2) 응보에 따른 처벌 판단이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지각된 책임 크기에 따라 조절됨을 시사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 범죄 시나리오를 사용한 고재홍(1995, 실험1,2)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부과된 처벌 크기는 범죄자에 대해서 지각된 책임크기가 작을 때는(공범) 피해 크기에 따른 차이가 없지만, 책임 크기가 클 때는(주범), 피해크기가 작은 조건보다 큰 조건에서 부과된 형량이 컸다.

##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처벌 목적 가운데 일반인 제지에 입각한 처벌 판단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은 발생률, 발견율, 및 주지율이다(참조 : 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Vidmar & Miller, 1980). 발생률(frequency)은 특정 범죄 행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를 말한다. 발견율(detection rate)은 특정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발견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의미한다. 주지율(publicity)은 특정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 행위가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나 알려지는가를 말한다. 일반인 제지는 공리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인간을 합리적 의사결정자로 가정하고, 처벌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수반되는 보수와 부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각에 영향을 미쳐 범죄 행위 자체가 지니는 매력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고 가정한다(Carlsmith, 2006). 판단자가 일반인 제지 관점에서 처벌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범죄의 발생률이 높을수록, 발견율은 낮을수록, 그리고 주지율이 높을수록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크기가 크다. 그 이유는 발생률이 높은 범죄일수록,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일수록,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범죄일수록 처벌을 크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에 대한 제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력화는 일반인 제지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범죄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 제지와 달리 처벌의 목적을 범죄 행위자의 재범 제지에 둔다.<sup>3)</sup> 이 관점은 범죄 행위는 범죄자의 내부 원인에 기인하며 미래 행위는 과거 행동을 통해서 가장 잘 예언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따라서 무력화의 관점에서 볼 때 처벌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Zimring & Hawkins, 1995). 무력화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시 핵심적으로 고려되

3) 연구자에 따라서는 특정 제지와 무력화를 구분하여 다루기도 하지만(예 : McFatter, 1982), 수감 기간을 기준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특정인 제지와 무력화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처벌 목적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무력화와 특정인 제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는 요소들은 범죄 전력, 충동성, 및 재범 가능성이이다 (Carlsmith, 2006; Darley et al., 2000; McFatter, 1978). 범죄 전력은 범죄 행위자가 과거에 현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를, 그리고 충동성은 범죄자가 기질적으로 지니는 충동성을 의미한다. 재범 가능성은 범죄자가 현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행위를 미래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의미한다. 무력화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범죄자가 범죄 전력이 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소인이 있는 경우(예 : 무직, 주거 불안정, 신용 불량, 참조 :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에는 그 사람에 대한 무력화 필요성이 높아서 강한 처벌이 부과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서 응보 구성 요소들의 중요성을 다룬 연구가 다수 보고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리주의에 따른 처벌 판단은 사형 제도의 제지 기능을 다룬 일부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참조 : Vidmar & Miller, 1980). 예를 들어, 미국에서 행해진 조사 연구들에서(예 : Ellsworth & Ross, 1983; Vidmar, 1974; Vidmar & Ellsworth, 1974) 사형 제도가 장래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고 믿는 정도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정도 간에 강한 정적 상관성이 발견되었다. 사형 제도의 제지 효과에 관한 정보를 조작한 실험 연구(Sarat & Vidmar, 1976, Vidmar & Miller, 1980에서 재인용)에서도, 사형의 제지 효과에 대한 믿음과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 정도 간에 정적 관계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Vidmar와 Miller(1980)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처벌에 관한 행동-통제 모델을 제안하고, 처벌의 제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조건에서 처벌 강도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처벌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믿을수록, 판단자 자신이 과거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장래에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범죄 발생률이 높을수록 공리주의적 처벌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여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부과된다.

###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규칙위반자나 범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판단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즉 가장 본원적인 처벌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먼저,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가운데 응보가 가장 본원적 처벌 목적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Fatter(1978)는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응보, 갱생, 일반인 제지 가운데 하나의 목적에 준하여 가상의 범죄자에게 형량을 부과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세 조건 가운데 응보 조건의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이 어떠한 시도 받지 않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과 가장 유사했다. 이는 응보가 가장 본원적인 처벌 목적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McFatter(1978)와 달리 Carlsmith와 동료들(Carlsmith et al., 2002; Darley, 2000)은 응보와 일반인 제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만든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를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참가자들이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만약 응보가 가장 본원적인 처벌 목적이라면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에서 응보 요소의 주효과만 나타나고 일반인 제지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Carlsmith 등(2002)은 이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은 응보 관련 요소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 반면,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음을 보였으며, 이 결과는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실험1). 아울러, 이 연구자들은 응보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은 판단자들이 해당 범죄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됨을 알아냈다(실험2).

또한, 응보와 무력화를 비교한 서구의 연구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은 무력화 관련 요소에 의해서는 영향받지 않으며, 응보 관련 요소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Darley 등(2000)은 응보와 무력화 관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대학생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자에게 부과한 형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에 따른 효과는 유의했으나, 무력화 요소의 조작은 참가자들이 내린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보다 최근에

Carlsmith(2006)는 가상의 범죄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부과하는 형량은 응보 관련 요소들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라는 결과를 반복 검증했다(실험1).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시 대학생 참가자들이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 관련 요소들에 대한 정보보다 응보 관련 요소들에 관한 정보를 자주 선택하며(실험2), 응보 관련 정보에 입각하여 형량을 결정한 참가자들이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 관련 정보에 입각하여 형량을 결정한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믿음이 강했다(실험3). 이러한 일련의 최근 연구들은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가운데 응보가 가장 본원적 처벌 목적임을 시사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처벌 판단에서 정보통합 방식을 다룬 고재홍(1995, 실험3)의 연구에서는 응보와 무력화 요소가 가산적으로 결합되어 처벌크기가 결정됨을 보였다. 이 연구자는 응보 구성 요소의 하나인 죄 크기와 무력화 관련 요소인 재범 가능성 수준을 조작하여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 행위자에게 부과한 형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죄 크기가 클수록 처벌 크기가 컸으며, 처벌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을수록 처벌 크기가 컸다. 반면에 두 변수 간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참가자들의 처벌 판단에서 응보 관련 요소와 무력화 관련 요소가 모두 고려되었음을 의미하며, 최소한 특정 조건에서는 두 변수가 가산적으로 결합되어 처벌크기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Hograth(1971)가 캐나다 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판사들은 갱생을 가장 중요한 선고 목적이라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김지현(1992)은 사범연수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갱생, 응보, 및 일반인 제지 목적에 해당되는 진술문 각 3개씩 총 9개 진술문 보여주고 이 진술문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범연수생들은 대학생들보다 갱생을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사범연수생들에 보다 일반인 제지를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응보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제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처벌의 본원적 목적을 탐색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응보를 지지하는 결과, 공리주의를 지지

하는 결과, 그리고 응보와 공리주의 요소가 가산적으로 결합하여 처벌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등이 혼재한다. 이러한 비일관된 결과는 부분적으로 처벌 판단자의 특성과 연구에서 다룬 처벌 목적 및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연구 결과의 비일관성은 각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참조: Carlsmith et al., 2002; Ellsworth & Mauro, 1998). 즉, 각기 다른 처벌 목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에 따른 처벌 판단 추이를 통해서 처벌의 근본 목적을 탐색하는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최소한 서구의 경우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가 아닌 응보가 처벌의 본원적 목적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반면에 판단자들에게 각 처벌 목적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를 평정하도록 하거나 처벌 판단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처벌 목적을 묻는 방식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공리주의적 목적이 범죄자 처벌의 본원적 목적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근본 목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판단자들에게 각 처벌 목적의 중요성을 직접 묻는 방식보다, 처벌 목적의 구성 요소 조작에 따른 처벌 판단의 추이를 비교하는 간접적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우선, 사람들에게 다양한 처벌 목적을 제시하여 그 중요성을 평정하도록 하면 모든 처벌 목적이 나름대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목적이 다 중요하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발생한다(참조: Anderson & MacCoun, 1999). 따라서 이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처벌 목적을 구별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정확하게 감찰하지 못하며, 그 결과 자신이 내리는 판단이나 결정의 정확한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Nisbett & Wilson, 1977). 따라서, 심지어 판단자들이 여러 가지 처벌 목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일관되게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판단의 이유를 묻는 방식은 처벌 판단의 원인보다는 판단에 대한 사후 정당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Carlsmith, 2006; Ellsworth & Gross, 1994).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상적 범죄 사건을 이용하여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가운데 일반인

이 지니는 처벌의 근본 목적을 확인하고자 했다. 각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추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 서구 연구에서는 응보가 가장 본원적 목적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반복해서 관찰되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응보와 무력화가 모두 중요한 처벌 목적으로 고려됨을 시사하는 결과(고재홍, 1995)가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를 모두 단일 설계에 포함시켜 처벌 판단의 추이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일반인들이 지니는 범죄자 처벌의 근본 목적이 응보라면, 처벌 대상자에 대한 처벌 크기는 응보 관련 구성요소(피해 크기, 의도성,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 존재)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반면, 특정인 제지나 무력화 관련 요소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일반인 제지가 처벌의 근본 목적이라면 처벌 크기는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발생률, 발견율, 및 주지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응보나 무력화 관련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는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근본 목적이 무력화에 있다면 처벌 크기는 무력화 관련 요소(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및 충동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반면, 응보나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실험 1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를, 실험 2에서는 응보와 무력화를, 그리고 실험 3에서는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를 모두 실험 설계에 포함시켜 위와 같은 대안적 가설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증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고자 했다. Carlsmith와 동료들(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의 연구에서는 응보에 따른 처벌 판단이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자의 도덕적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됨을 보였다. 반면에, 이들의 연구에서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는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심리적 기제는 알기 어렵다.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재홍(1995)의 연구에서는 응보 관련 요소에 더해서 무력화 관련 요소 역시 처벌 크기에 영향을 미쳤지만, 각각의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각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을 매개하는 심

리적 기제를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보고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처벌 상황에서 처벌 판단자가 경험하는 도덕적 분개감은 처벌 의도 및 처벌 크기와 정적 관계를 지니며(예 : Lerner, Goldberg, & Tetlock, 1998; Tetlock, Peterson, & Lerner, 1996), 지각된 피해 크기는 처벌 대상자에 대한 도덕적 분개감과 정적 관계를 지닌다(Darley et al., 2000). 이러한 추세와 일관되게 Darley 등(2000)의 연구에서 지각된 피해 크기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처벌 판단자가 경험하는 도덕적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응보에 입각한 처벌 판단은 규칙위반이나 범법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의 크기에 비례하여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하며, 처벌대상자가 벌받을만하다는 지각과 연합된 부적 감정을 수반한다(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Darley 등(2000)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응보에 입각한 처벌 판단에서 처벌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판단자가 해당 범죄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이라고 가정하고, 응보에 따른 처벌 판단에서 도덕적 분개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응보와 달리 일반인 제지는 처벌을 통해서 일반 대중이 장래에 규칙위반이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무력화의 경우 규칙위반자나 범법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사람이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 제지나 무력화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에서는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성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Vidmar & Miller, 1980). 즉, 일반인 제지나 특정인 제지로서의 무력화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은 판단자가 지각하는 처벌의 제지효과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제지와 무력화에 따른 처벌 판단은 처벌의 제지 효과에 관한 지각이 매개하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판단은 일반인 제지 목적에 입각한 판단과는 다른 고유한 심리적 기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처벌 판단 상황에서 행위자가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정보와 재범 가능성 및 충동성이 높다는 정보는 행위자에 대한 범죄 성향 추론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판단자는 그 사람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높은 수준의 형량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처벌 판단에 관한 귀인 분석(Carroll, Perkowitz, Luriegio, & Weaver, 1987; Feather & Souter, 2002; Weiner, 1995)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많을수록 판단자는 범죄 행위를 피고인의 범죄자적 특성이나 범죄 의도와 같은 내적 안정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장래에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여 무력화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한다. 이는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판단은 처벌 대상자에 대한 성향추론에 의해서 매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처벌 대상자가 범죄 전력이 많고 재범 가능성과 충동성이 높다는 정보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고양된 사회 보호 필요성 지각으로 인해서 무력화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제지 효과성에 관한 지각에 더해 범죄 행위자에 대한 성향추론과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여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판단에서 이 두 변수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탐색하고자 했다.

### 실험 1

실험 1은 응보와 공리주의 처벌 목적 가운데 일반인 제지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했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가상의 범죄 사건을 담은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법 행위자에게 적절한 형량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처벌 크기를 결정했다. 범죄 사건 시나리오는 응보 목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피해 크기,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의도성)와 일반인 제지 목적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발견율, 주지율, 범죄 발생률)를 각각 달리 조작하여 구성했다. 참가자들이 지닌 처벌의 근본 목적은 선행연구(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와 일관되게, 참가자들의 처벌 판단이 응보 관련 요소들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지(응보 주효과), 일반인 제지 관

련 요소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지(일반인 제지 주효과), 또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달리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점검하였다.

### 방법

#### 참가자 및 실험 설계

서울 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의 심리학 강좌 수강생 55명(남자 34명, 여자 21명)이 연구 참가 점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응보 요소: 저/고)×2(일반인 제지 요소: 저/고) 피험자 간 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n=12~13).

#### 절차

참가자들에게 ‘유죄로 판명된 범죄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라고 소개했다. 범죄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비 끝에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구성했으며, 실험은 최대 10명까지 집단으로 실시했다. 범죄 사건 시나리오는 선행 연구(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2)를 참조하여 응보 목적과 일반인 제지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총 6개의 정보로 구성되었다<sup>4)</sup>. 이 가운데 응보 관련 요소는 피해 크기,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의도성이었으며,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는 발견율, 주지율, 범죄 발생률이었다. ‘응보 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크기가 작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존재하며, 가해자의 의도성이 낮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반면에, ‘응보 고’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피해 크기가 크고,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없으며, 가해자의 의도성이 높다고 알려주었다. ‘일반인 제지 저’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사건과 같은 범죄는 발견하기 쉽고,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며, 발생률이 낮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반면에, ‘일반인 제지 고’ 조건에서는 발견율이 낮고, 주지율이 높으며, 발생률이 높다는 정보를 제

4) 연구 결과가 특정 유형의 범죄 사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일 목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횡령 사건’을 소재로 범죄 사건을 구성하여 추가로 실험하였다. 이 실험의 결과가 본질적으로 실험 1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으므로, 폭행 사건의 자료만 제시하였다.

공했다. 응보와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은 각각 하나씩 총 6장의 카드에 인쇄하여 제시되었으며, 카드를 읽기 전에 참가자 스스로 6장의 카드를 섞도록 하여 6개 요소의 제시 순서를 무선했다. 실험에 사용된 6개 정보는 58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유효성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실험의 각 조건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서 6장의 카드에 적힌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조작 점검 문항, 처벌 판단 측정 문항, 및 부가적 측정치들이 포함된 질문지 책자를 완성했다. 참가자들이 질문지를 완성한 후 구두로 실험 해명을 실시했다.

### 중속 측정치

본 연구의 주 중속 측정치는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등장한 피고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한 형벌 강도와 참가자들 스스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이다. 형벌 강도는 ‘피고인에게 얼마나 강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1=매우 약한 강도, 7=매우 강한 강도)를 물어 측정했다. 형량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최저 1일, 최고 15년의 범위에서 기입하도록 했다.

### 부가적 중속 측정치

응보와 일반인 제지 목적에 따라 처벌 판단이 달라 나타날 경우 각 처벌 목적이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경험한 도덕적 분개 수준과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에 대한 지각을 측정했다. 참가자들이 경험한 도덕적 분개 수준은 ‘사건 시나리오에 등장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였는지’, 그리고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 행위를 읽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물어 측정했다(1=전혀, 7=매우). 처벌의 제지 효과성은 ‘가까운 장래에 참가자 스스로 시나리오에 등장한 사건의 피해자와 유사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측정했다(1=매우 낮음, 7=매우 높음). 본 연구에서는 수감을 전제로 처벌 대상자에 대해 형량을 추천하는 절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처벌의 제지 효과성을 직접 물으면 반응 변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성에 대한 지각

은 판단자 자신이 장래에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증가한다(참조 : Thomas & Howard, 197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벌의 제지 효과성을 직접 묻는 대신 참가자 본인의 범죄 피해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하는 간접 방식을 취했다. 아울러, 처벌 판단에 관한 자료 분석시 통제할 목적으로 ‘참가자 본인이 과거에 시나리오에 제시된 것과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예/아니오)와 ‘피고인과 참가자 간에 지각된 유사성’을 측정했다(1=전혀, 7=매우).

### 결과

#### 조작점검

응보 관련 요소 가운데 피해 크기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개인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2문항의 평균으로 점검했다( $r=88, p<.001$ ).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 혹은 상황 요인이 어느 정도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느 정도나 납득할 수 있는지’를 묻은 2문항의 평균으로 조작 효과를 점검했다( $r=69, p<.001$ ). 의도성의 조작 효과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얼마나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2문항의 평균으로 점검했다( $r=42, p<.001$ ).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 가운데 발견율의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이 발각될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자를 찾아내어 체포하기가 얼마나 쉬울 것 같은지’를 묻은 2문항의 평균으로 점검했다( $r=53, p<.001$ ). 주지율의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 사건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나 알려질 것 같은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 사건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나 공개될 것 같은지’를 묻은 2문항의 평균으로 점검했다( $r=79, p<.001$ ). 발생률의 조작 효과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범죄 사건이 총 범죄 사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 같은지’를 묻은

2문항의 평균으로 점검했다( $r=56, p<.001$ ). 모든 조작 점검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7=매우)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이원변량분석한 결과, 응보관련 요소와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의 조작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응보 관련 요소들 가운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 크기는 ‘응보 저’ 조건( $M=4.15$ )보다 ‘응보 고’ 조건( $M=5.48$ )에서 크다고 지각되었다,  $F(1,51)=15.67, p<.001$ .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에 대한 지각(역변환)에서 참가자들은 ‘응보 고’ 조건( $M=1.89$ )보다 ‘응보 저’ 조건( $M=3.06$ )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 요인이 많았다고 응답했다,  $F(1,51)=9.18, p<.01$ . 그리고 피고인의 의도성은 ‘응보 저’ 조건( $M=1.94$ )보다 ‘응보 고’ 조건( $M=3.00$ )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F(1,51)=12.73, p<.01$ . 응보 관련 세 요소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 $ps>.14$ ), 두 변수 간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ps>.19$ ).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 가운데 발견율은 예상대로 ‘일반인 제지 저’ 조건( $M=4.65$ )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3.23$ )에서 낮다고 지각되었다,  $F(1,51)=17.77, p<.001$ . 주지율은 ‘일반인 제지 저’ 조건( $M=2.52$ )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3.61$ )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F(1,51)=8.67, p<.01$ . 발생률 역시 예상대로 ‘일반인 제지 저’ 조건( $M=4.24$ )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5.27$ )에서 높게 지각되었다,  $F(1,51)=8.93, p<.01$ . 발견율과 발생률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응보 관련 요소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 $ps>.12$ ),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ps>.14$ ). 예상과 달리 주지율에서 ‘응보 고’ 조건과 ‘응보 저’ 조건 간 차이가 경계선에서 유의했으나,  $F(1,51)=3.59, p<.07$ ,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F<1$ ) 주지율 조작도 성공적이었다.

### 처벌 강도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이 편포를 이루어 이를 log 변환했다. 참가자들이 부과한 형량은 형벌 강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r=.45, p<.01$ ), log 변환된 형량과 형벌 강도를 Z점수로 변환하여 두 Z점수의 평균으로 처벌 강도를 산출했다

(표 1). 처벌 강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고/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해서, ‘응보 고’ 조건의 참가자들이( $M=.52$ ) ‘응보 저’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M=-.54$ )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51)=33.36, p<.001, \eta^2=.40$ . 반면에 일반인 제지 및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ps>.20$ . 이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가운데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이 본원적 목적은 응보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1. 응보와 일반인 제지 목적에 따른 처벌 강도의 평균(표준편차)

	일반인 제지 저		일반인 제지 고	
	M	(SD)	M	(SD)
응보 저	-.37	(.58)	-.69	(.78)
응보 고	.44	(.64)	.59	(.67)

### 매개 분석

도덕적 분개 수준을 묻은 두 문항을 평균하여( $r=.85, p<.01$ ), 응보 관련 요소들의 수준 차이가 처벌 강도에 미친 영향이 참가자들이 범죄 사건으로부터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되는지 알아보았다. 매개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따랐다. 분석 결과, 응보 요소 조작이 종속 변수인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62, p<.001$ ), 응보 요소 조작이 매개 변수인 도덕적 분개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52, p<.001$ ). 그리고 응보 요소와 도덕적 분개감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도덕적 분개감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34, p<.01$ ), 응보 요소의 회귀계수는 .45( $p<.001$ )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 Sobel 검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도덕적 분개감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Z=4.17, p<.001$ . 참가자의 범죄 피해 전력 및 피고인과 참가자 간 지각된 유사성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 실험 2

실험 1에서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한 처벌 크기는 응보 관련 요소들에 의해서는 달리

나타났지만,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에 의해서는 영향 받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일반 대중에 대한 제지효과에 초점을 둔 일반인 제지 대신, 범법 행위자의 재범 방지에 초점을 무력화를 연구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처벌 판단의 추이를 알아보았다. 서구의 선행연구(Darley et al., 2000)에서는 응보와 무력화를 직접 비교했을 때 응보 요소들은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반면, 무력화 요소들은 처벌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고재홍(1995, 실험3)의 연구에서는 응보 관련 요소(죄 크기)와 무력화 관련 요소(재범 가능성)가 독립적으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실험 2에서는 고재홍(1995)의 연구와 달리 응보 관련 세 요소와 무력화 관련 세 요소를 모두 연구에 포함시켜 두 가지 처벌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을 비교하였다. 이에 더해서 도덕적 분개감, 처벌의 제지 효과성 지각, 범죄 행위자에 대한 성향추론, 그리고 범죄 행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을 통해서 응보와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 방법

### 참가자 및 실험 설계

서울 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의 심리학 강좌 수강생 81명(남자 42명, 여자 39명)이 연구 참가 점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응보 요소 : 저/고)×2(무력화 요소 : 저/고) 피험자간 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n=19~21).

### 절차

실험은 최대 8명까지 집단으로 실시했으며, 실험 절차는 다음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실험 1과 동일했다. 첫째,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사용한 폭행 사건 시나리오에 일반인 제지 요소대신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판단의 세 가지 요소로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및 충동성을 포함시켰다. ‘무력화 저’ 조건의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이 ‘과거에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범죄심리 전문가의 진단 결과 다시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으며, 종합 성격검사 결과 충동성 점

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무력화 고’ 조건에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형과 1회의 보호관찰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범죄심리 전문가의 진단 결과 다시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종합 성격검사 결과 충동성 점수가 높았다’는 정보를 제시했다.

둘째, 무력화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할 목적으로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향 추론, 피고로부터의 사회 보호 필요성, 그리고 실험 1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보완하여 처벌의 제지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질문지에 포함시켰다. 먼저, 피고인이 지니는 범죄 성향에 대한 판단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기질적 성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서 측정했다(1=매우 적음, 7=매우 많음). 사회 보호필요성은 ‘피고인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나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피고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느 정도나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했다(1=매우 낮음, 7=매우 높음). 처벌의 제지 효과성은 ‘참가자 자신, 참가자의 가족, 그리고 참가자의 이웃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세 개의 문항으로 측정했다(1=매우 낮음, 7=매우 높음).

셋째, 실험 1에서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사건에 대한 참가자들의 도덕적 분개감을 측정한 반면, 실험 2에서는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에 대한 분개감과 피고인에 대한 분개감을 묻는 각 2문항씩 총 4문항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이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을 측정했다.

## 결과

### 조작점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응보 관련 세 요소들은 각각 두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각 요소 별로 문항 간 상관이 모두 높았으므로( $r_s=.55\sim.80$ ,  $p_s<.001$ ) 분석은 두 문항의 평균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응보 저’ 조

건( $M=3.73$ )보다 ‘응보 고’ 조건( $M=5.66$ )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지각했다,  $F(1,77)=58.17, p<.001$ .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역변환)에서도 ‘응보 저’ 조건( $M=3.49$ )보다 ‘응보 고’ 조건( $M=2.17$ )에서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이 적다고 응답했다,  $F(1,77)=28.56, p<.001$ . 의도성에서도 예상대로 ‘응보 저’ 조건( $M=1.89$ )보다 ‘응보 고’ 조건( $M=3.18$ )에서 피고인의 의도성을 높게 지각했다,  $F(1,77)=28.85, p<.001$ . 응보 관련 요소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무력화 관련 요소들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 $ps>.11$ ),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ps>.34$ ).

무력화 관련 요소들의 조작 효과는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충동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을 측정하여 점검했다. 범죄 전력의 조작 효과는 ‘피고인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폭행 사건 이전에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검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조작한대로 정확하게 응답했다. 재범 가능성은 ‘피고인이 폭행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장차 유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1=전혀 없음, 7=매우 높음)를 물어서 점검했다. 이 두 문항의 평균( $r=.62, p<.001$ )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무력화 저’ 조건( $M=3.95$ )보다 ‘무력화 고’ 조건( $M=5.83$ )에서 피고인이 장차 폭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F(1,77)=76.79, p<.001$ . 충동성 조작효과는 ‘피고인이 충동적 성향을 어느 정도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피고가 사려깊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지’(역변환)를 물어서 점검했다. 이 두 문항의 평균( $r=.42, p<.001$ )을 분석한 결과, ‘무력화 저’ 조건( $M=4.64$ )보다 ‘무력화 고’ 조건( $M=5.82$ )의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충동성을 높게 지각했다,  $F(1,77)=34.93, p<.001$ . 무력화 관련 요소들에 대한 참가자들의 지각은 응보 관련 요소들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지 않았으며( $ps>.10$ ), 상호작용효과도 발견되지 않았다( $ps>.31$ ).

### 처벌 강도

실험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과 형벌 강도를 변환하며

처벌 강도를 산출했다( $r=.65, p<.01$ )(표 2). 처벌 강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주효과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가가 모두 유의했다. 즉, ‘응보 고’ 조건의 참가자들이( $M=.54$ ) ‘응보 저’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M=-.53$ )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77)=55.47, p<.001, \eta^2=.42$ . 또한, ‘무력화 고’ 조건( $M=.34$ )의 참가자들이 ‘무력화 저’ 조건( $M=-.35$ )의 참가자들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77)=10.26, p<.001, \eta^2=.24$ . 반면에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F<1$ . 이는 응보 관련 요소와 무력화 관련 요소가 독립적으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죄 크기(응보 요소)과 재범가능성(무력화 요소)을 조작하여 처벌 크기를 비교한 고재홍(1995, 실험 3)의 결과와 일관된다.

표 2. 응보와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강도의 평균(표준편차)

	무력화 저		무력화 고	
	M	(SD)	M	(SD)
응보 저	-.90	(.66)	-.18	(.64)
응보 고	.19	(.78)	.90	(.50)

### 매개 분석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에 대한 분개감과 피고인에 대한 분개감을 묻은 네 가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설명변량=84.99%). 따라서 네 문항의 평균( $\alpha=.94$ )을 산출하여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종속 변수인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59, p<.001$ ), 응보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도덕적 분개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32, p<.01$ ). 그리고 응보 요소와 도덕적 분개감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도덕적 분개감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며( $\beta=.46, p<.001$ ), 응보 요소의 회귀계수는 .45( $p<.001$ )로 감소했다. Sobel 검증 결과 응보 요소 조작이 도덕적 분개감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추세가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Z=1.13, p<.13$ .

무력화 관련 요소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향 지각 평균( $r=.70, p<.01$ ), 피

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각 평균( $a=.87$ ), 그리고 처벌의 제지 효과성 지각 평균( $a=.88$ )을 각각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향 지각의 매개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39, p<.001$ ),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77, p<.001$ ). 무력화 요소와 범죄 성향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beta=.46, p<.01$ ),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감소했다( $\beta=.03, n.s$ ).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범죄 성향 지각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Z=2.89, p<.01$ .

피고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 역시 무력화 요소가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39, p<.001$ ),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49, p<.001$ ). 무력화 요소와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beta=.66, p<.001$ ),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감소했다( $\beta=.06, n.s$ ).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Z=1.92, p<.03$ ). 한편, 무력화 요소의 조작에 따라서 처벌의 제지 효과성이 달리 지각되지 않아서( $\beta=.12, p>.31$ ) 제지 효과성 지각의 매개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참가자의 범죄 피해 전력 및 피고인과 참가자 간 지각된 유사성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 실험 3

실험 1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을, 그리고 실험 2에서는 응보와 무력화 관련 요소들을 조작하여 참가자들이 가상의 범법 행위자에게 부과한 처벌 크기를 비교했다. 실험 3에서는 응보, 일반인 제지, 무력화 관련 요소들을 단일 설계에 모두 포함시켜 실험 1

과 2의 결과를 반복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방법

#### 참가자 및 실험 설계

서울 소재 대규모 사립대학의 심리학 강좌 수강생 130명(남자 67명, 여자 63명)이 연구 참가 점수를 받고 실험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응보 요소: 저/고)×2(일반인 제지 요소: 저/고)×2(무력화 요소: 저/고) 피험자간 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n=30\sim36$ ).

#### 절차

실험 1과 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응보 관련 요소,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 및 무력화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총 9개의 정보를 혼합하여 8개의 실험 조건을 구성했다. 질문지에 실험1의 일반인 제지 요소 관련 질문들과 실험 2의 무력화 요소 관련 질문들을 모두 포함시킨 점을 제외하고는 실험 절차 및 측정치들은 모두 실험 2와 동일하다.

### 결과

#### 조작점검

실험 1, 2와 마찬가지로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관련 세 요소들의 조작점검 문항은 각각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 별로 문항 간 상관성이 모두 높았으므로( $r_s=.42\sim.86, p_s<.001$ ) 분석은 요소 별 두 문항의 평균을 이용했다. 실험 2와 동일하게, 무력화 요소 가운데 범죄 전력의 조작 효과는 피고인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폭행 사건 이전에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검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조작한대로 정확하게 응답했다.

응보 관련 요소들 가운데 피해 크기에서는 ‘응보 저’ 조건( $M=3.62$ )보다 ‘응보 고’ 조건( $M=5.44$ )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크게 추정했다,  $F(1,122)=92.74, p<.001$ . 예상과 달리 무력화 요소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해서, ‘무력화 고’ 조건( $M=4.73$ )의 참가자들이 ‘무력화 저’ 조건( $M=4.32$ )의 참가자들보다 피해 크기를

크게 추정했다,  $F(1,122)=4.61, p<.04$ .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 $ps>.09$ ).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에서도 ‘응보 저’ 조건 ( $M=4.47$ )보다 ‘응보 고’ 조건( $M=3.55$ )에서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이 적다고 응답했다,  $F(1,122)=17.21, p<.001$ . 응보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21$ ). 또한 참가자들은 ‘응보 고’ 조건 ( $M=3.11$ )에서 ‘응보 저’ 조건( $M=2.01$ )보다 피고인의 의도성을 높게 지각했다,  $F(1,122)=31.94, p<.001$ . 의도성에서도 응보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07$ ).

일반인 제지 요소들 가운데 발견율에서는 예상대로 ‘일반인 제지 저’ 조건( $M=5.44$ )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3.62$ )에서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사건의 발견율을 낮게 지각했다,  $F(1,122)=32.78, p<.001$ . 발견율에서 일반인 제지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11$ ). 또한 예상대로 ‘일반인 제지 저’ 조건( $M=2.81$ )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3.56$ )에서 주지율을 높게 지각했다,  $F(1,122)=12.25, p<.001$ . 주지율에서도 일반인 제지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14$ ). 발생률역시 ‘일반인 제지 저’ 조건( $M=3.96$ )보다 ‘일반인 제지 고’ 조건( $M=5.09$ )에서 발생률을 높게 지각했다,  $F(1,122)=32.13, p<.001$ . 발생률에서도 일반인 제지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21$ ).

끝으로 무력화 요소들 가운데 충동성에서는 예상대로 ‘무력화 저’ 조건( $M=3.54$ )보다 ‘무력화 고’ 조건( $M=4.17$ )에서 피고인의 충동성을 높게 지각했다,  $F(1,122)=31.07, p<.001$ . 충동성에서 무력화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12$ ). 또한 ‘무력화 저’ 조건( $M=4.06$ )보다 ‘무력화 고’ 조건( $M=5.47$ )에서 피고인이 장래에 폭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F(1,122)=47.87, p<.001$ . 예상과 달리 재범 가능성에서 응보 요소의 주효과도 유의했는데, ‘응보 저’ 조건( $M=4.53$ )의 참가자들보다 ‘응보 고’ 조건 ( $M=5.00$ )의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높게 추정했다,  $F(1,122)=5.31, p<.05$ . 그러나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13$ ).

**처벌 강도**

실험 1, 2와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게 부과한 형량과 형벌 강도를 표준화한 후 이를 평균하여 처벌 강도를 산출했다( $r=.69, p<.001$ )(표3). 처벌 강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주효과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했다. 즉, ‘응보 고’ 조건의 참가자들이( $M=.49$ ) ‘응보 저’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M=-.50$ ) 피고인에게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122)=60.17, p<.001, \eta^2=.34$ . 또한, ‘무력화 고’ 조건( $M=.28$ )의 참가자들이 ‘무력화 저’ 조건( $M=-.29$ )의 참가자들보다 강한 처벌을 부과했다,  $F(1,122)=20.74, p<.001, \eta^2=.15$ . 응보 요소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과 이외에 다른 모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ps>.12$ ). 이는 실험 2의 결과와 일관되며,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정보가 모두 가용할 때에도 참가자들의 판단은 응보 요소와 무력화 요소 모두에 의해서 영향받았음을 보여준다.

표 3.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강도의 평균(표준편차)

		무력화 저	무력화 고
응보 저	일반인 제지 저	-.78(.78)	-.39(.96)
	일반인 제지 고	-.73(.76)	-.11(.72)
응보 고	일반인 제지 저	.46(.49)	.81(.71)
	일반인 제지 고	-.11(.64)	.83(.56)

**매개 분석**

실험 2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분개 수준을 묻은 네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설명 변량=82.23%). 따라서 네 문항의 평균( $a=.95$ )을 산출하여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매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종속 변수인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54, p<.001$ ), 응보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도덕적 분개감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38, p<.01$ ). 그리고 응보 요소와 도덕적 분개감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도덕적 분개감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으며( $\beta=.45, p<.001$ ), 응보 요소의 회귀계수는 .37( $p<.001$ )로

감소했다. Sobel 검증 결과 응보 요소의 조작이 도덕적 분개감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Z=3.23$ ,  $p<.001$ .

무력화 관련 요소의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향 지각 평균( $r=.76$ ,  $p<.001$ ),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각 평균( $a=.87$ ), 그리고 참가자 자신, 가족, 이웃의 장래 범죄 피해 가능성으로 간접 측정된 처벌의 제지 효과성 지각 평균( $a=.86$ )을 각각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향 지각의 매개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29$ ,  $p<.01$ ),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51$ ,  $p<.001$ ). 무력화 요소와 범죄 성향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범죄 성향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beta=.59$ ,  $p<.01$ ),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수는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했다( $\beta=-.02$ , ns.).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범죄 성향 지각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Z=4.32$ ,  $p<.001$ .

피고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 역시 무력화 요소가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고( $\beta=.29$ ,  $p<.01$ ),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했다( $\beta=.29$ ,  $p<.01$ ). 무력화 요소와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을 동시에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매개 변수인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이 처벌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반면( $\beta=.67$ ,  $p<.001$ ), 무력화 요소의 회귀계수는 0에 가까운 값으로 감소했다( $\beta=.09$ , ns.). Sobel 검증 결과 무력화 요소의 조작이 사회보호 필요성 지각을 통해서 처벌 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유의했다,  $Z=2.59$ ,  $p<.01$ . 한편, 실험 2와 마찬가지로 무력화 요소의 조작에 따라서 처벌의 제지 효과성이 달리 지각되지 않아서( $\beta=-.08$ , ns.) 제지 효과성 지각의 매개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끝으로, 참가자의 범죄 피해 경험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기치 않게 피고인과 참가자

간 지각된 유사성에서 응보 요소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122)=6.90$ ,  $p<.02$ . 즉, ‘응보 저’ 조건( $M=2.70$ )에서 ‘응보 고’ 조건( $M=2.10$ )보다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과 자신의 유사성을 크게 지각했다. 그러나 지각된 유사성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처벌 강도에 대한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응보 요소의 주효과와 무력화 요소의 주효과만 유의했으며, 지각된 유사성에서 응보 요소와 다른 요소들의 상호작용 역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ps>.47$ ).

## 논 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응보, 일반인 제지, 그리고 무력화에 입각한 처벌 판단의 추이를 비교하여 범죄자 처벌의 본원적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선행 연구(Carlsmith, 2006; Carlsmith et al., 2006; Darley et al., 2000)에 의하면, 만약 범죄자 처벌의 본원적 목적이 응보라면 처벌 판단은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크기, 처벌 대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화 요인으로서의 참작할 만한 상황요인, 그리고 처벌 대상자의 의도성 정보에 의해서만 영향받아야 한다. 반면에, 일반인 제지가 본원적 목적이라면 처벌 판단은 해당 범죄 사건의 발견율, 주지율, 및 발생률 정보에 의해서만 달리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무력화가 본원적 목적이라면 처벌 판단은 처벌 대상자의 범죄 전력, 재범 가능성, 및 충동성 정보에 의해서만 영향받아야 한다. 이 가설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응보와 일반인 제지(실험1), 응보와 무력화(실험2), 그리고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실험3) 관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킨 범죄 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에 제시된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 값을 비교했다.

실험 1에서 참가자들이 범죄 행위자에게 부과한 처벌은 응보 요소의 조작에 의해서만 영향받았으며, 일반인 제지 요소의 효과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1에서는 또한 응보 관련 요소들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사건에 대해서 판단자들이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에 의해서 매개됨을 보였다. 이 결과는 두 처벌 목적을 비교한 Carlsmith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실험 2에서는 응보 관련 요소들과 무력화 관련 요소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일관되게 응보 관련 요소들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판단자들이 경험한 도덕적 분개감 수준에 의해서 매개됨을 시사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뿐만 아니라, 무력화 요소들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지각된 범죄 성향과 그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지각에 의해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요소들을 단일 설계에 모두 포함시킨 실험 3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실험 1과 3의 결과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가운데 본원적인 처벌 목적은 응보임을 시사하며, 이는 두 처벌 목적을 비교한 서구의 선행 연구(Carlsmith et al., 2002)와 일관된다.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이 응보 관련 요소들과 동시에 제공되는 연구 방법에 기인한 인공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로는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이 처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함께 제시된 응보 관련 요소들 때문에 그 효과가 절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정보의 순서가 무선택되었고, 실험 2와 3에서 무력화 관련 요소들은 일관되게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 대안적으로, 제지 목적에 입각한 처벌 판단에서 처벌이 지니는 제지 효과성 신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Vidmar & Miller, 1980)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의 범죄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패러다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처벌의 제지 효과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해석 역시 제지의 또 다른 단면인 무력화 관련 요소들이 실험 2와 3에서 처벌 판단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약하다.

위와 같은 대안적 해석보다는, 응보 관련 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처벌 판단

상황에서의 기본(default) 처리 모형은 도덕적 분개감을 매개로하는 응보-기반 처리이며,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은 일종의 기저울 정보처럼 무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은 응보 관련 요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따라서 이 요소들에 근거한 판단은 일정 정도 처리 동기나 자원을 요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 이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벌 판단은 공리주의 처벌관의 가정과 달리 일반 대중의 장래 범죄 제지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깊은 처리를 동반하는 합리적 사고 과정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Carlsmith et al., 2002; Darley et al., 2000)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필자들의 이 해석과 달리, 본 연구에서 다른 범죄 사건이 일반인 제지의 측면을 고려할 만큼 심각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적발하기 어렵고 주지율이 높은 사건자체가 매우 희귀하여 일반인들이 그러한 사건을 접해본 빈도가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 일반인 제지 목적이 실험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처벌 판단 장면에서 응보 관련 요소들과 일반인 제지 관련 요소들이 지니는 정보적 진단가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래 연구에서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하는 한편, 각각의 처벌 목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예비연구에서 참가자들이 기술한 범죄자 처벌의 목적을 분석했을 때 응보 목적에 비해서 공리주의적 목적을 담은 진술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예 : Carlsmith, 2002)의 결과와도 일관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처럼 일반인들이 ‘주장하거나 신봉하는’ 처벌 목적과 처벌 판단에 ‘실제로 사용하는’ 기준 간의 비일관성의 기저에 있는 인지적 및 동기적 과정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에게 처벌의 근본 목적을 직접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인상관리 동기가 작동하여 응보보다 제지관련 목적을 다수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응보와 무력화 목적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2와 3의 결과는 응

보와 무력화 관련 요소들이 가산적으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보인 고재홍(1995)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반면에, 이 결과는 응보 관련 요소와 동시에 조작되었을 때 무력화 관련 요소들은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인 Darley 등(2000)의 연구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처벌판에서의 문화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무력화 관련 요소들이 유발하는 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 처벌 목적에 관한 상식이론에서의 문화 간 차이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목적 이외에도 특정인 제지나 갱생 등의 처벌 목적이 처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 범죄 사건을 활용하여 범법자에게 징역형량을 구형하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갱생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은 다루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처벌 목적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상식이론으로 지니고 있는 처벌 목적을 조사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른 효과를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응보와 일반인 제지, 그리고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의 추이를 비교하고자 했기 때문에, 해당 목적을 구성하는 요소들만을 변화시키고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모두 고정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이는 처벌 목적에 따른 판단 추이를 알아보기에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실제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 특성, 표적 특성, 판단자와 표적의 관계 등의 효과를 알아볼 수 없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처벌 판단을 다루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 실무자들의 처벌 판단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바가 없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서는 특정 처벌 목적만이 배타적으로 고려되기보다는 다양한 목적들이 판단자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처벌 목적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관한 이론 형성 및 검증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사법 장면에서 일반화하거

나 사법체제와 관련된 직접적 함의를 탐색하는 작업은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처벌의 근본 목적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일반인이 지니고 있는 처벌목적에 관한 상식이론(lay theory)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이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처벌 판단시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고려하는 목적을 알아냄으로써 개인이 상식이론으로 지니고 있는 처벌 목적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처벌 체계(예 : 가정, 학교, 조직, 사법체계, 군대 등)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나 심리적 수용 간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재홍 (1991). 잘못, 책임 및 처벌 : 처벌 판단에 관한 가상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6(1), 1- 21.
- 고재홍 (1995). 처벌크기판단에 관여하는 정보들의 통합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9(2), 29-50.
- 고재홍 (1996). 책임 판단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0(1), 1-20.
- 김일수, 배종대 (1998). 법치국가와 형법. 서울 : 세창출판사.
- 김지현 (1992). 법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선고 목적 선호와 형량 결정 과정에 미치는 선고 맥락의 효과.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광배 (2004). 법심리학. 서울 : 학지사.
- 법원행정처 (1999). 양형실무. 서울 : 법원행정처.
- 한정환 (1998). 예방목적의 통합형벌이론(상), 사법행정, 12월, 7-16.
- 한정환 (1999). 예방목적의 통합형벌이론(하), 사법행정, 1월, 12-19.
- Alicke, M. D. (2000). Culpable and the psychology of blame. *Psychological Bulletin*, 126, 556-574.
- Anderson, M. C., & MacCoun, R. J. (1999). Goal conflict in juror assessments of compensatory and punitive damages. *Law and Human Behavior*, 23, 313-330.
- Austin, W., Walster, E., & Utne, M. K. (1976). Equity and the law : The effect of harmdoer's

- suffering in the act on liking and assigned punishment. In L. Berkowitz & E. Walster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9, pp.163-190). New York : Academic Press.
- Baron, R.,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arlsmith, K. M. (2006). The roles of retribution and utility in determining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437-451.
- Carlsmith, K. M., Darley, J. M., & Robinson, P. H. (2002). Why do we punish?: Deterrence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284-299.
- Carroll, J., Perkowski, W. T., Lurigio, A. J., & Weaver, F. M. (1987). Sentencing goals, causal attributions, ideology,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07-118.
- Darley, J. M., Carlsmith, K. M., Robinson, P. H. (2000). Incapacitation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Law and Human Behavior*, 24, 659-683.
- Ellsworth, P. C., & Gross, S. R. (1994). Hardening of the attitudes : Americans' view on the death penalty.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52.
- Ellsworth, P. C., & Mauro, R. (1998). Psychology and law.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 684-732). New York : McGraw-Hill.
- Ellsworth, P. C., & Ross, L. (1983). Public opinion and capital punishment : A close examination of the views of the views of abolitionists and retentionists. *Crime and Delinquency*, 29, 116-167.
- Feather, N. T. (1998). Reactions to penalties for offenses committed by the police and public citizens : Testing a social-cognitive process model of retributive just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28-544.
- Feather, N. T. (1999). Judgments of deservingness :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justice and achie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86-107.
- Feather, N. T., & Deverson, N. H. (2000). Reactions to a motor-vehicle accident in relation to mitigating circumstances and gender and moral worth of the driv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77-95.
- Feather, N. T., & Souter, J. (2002). Reactions to mandatory sentences in relation to the ethnic identity and criminal history of the offender. *Law and Human Behavior*, 26, 417-438.
- Hamilton, V. L., & Rytina, S. (1980). Social consensus on norms of justice : Should the punishment fit the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 1117-1144.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 Hogarth, J. (1971). *Sentencing as a human process*. Toronto, Canada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Lerner, M. J. (2003). The justice motive : Where social psychologists found it, how they lost it, and why they may not find it aga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388-399.
- Lerner, M. J., Goldberg, J. H., & Tetlock, P. E. (1998). Sober second thought :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anger, and authoritarianism on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563-574.
- McFatter, R. M. (1978). Sentencing strategies and justice : Effect of punishment philosophy on sentencing deci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90-1500.
- McFatter, R. M. (1982). Purpose of punishment : Effects of utilities of criminal sanctions on

- perceived appropriatene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7, 255-267.
- Nisbett, R. E., & Wilson, T. D. (1977).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 Verbal reports on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 231-259.
- Reyna, C., & Weiner, B. (2001). Justice and utility in the classroom :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the goals of teachers' punishmen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309-319.
- Roberts, J. V., & Gebotys, R. J. (1989). The purposes of sentencing : Public support of competing aim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7, 387-402.
- Rosen, B., & Jerdee, T. H. (1974). Factors influencing disciplinary judgm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327-331.
- Sarat, A., & Vidmar, N. (1976). Public opinion, the death penalty, and the Eighth Amendment : Testing the Marshall hypothesis. *Wisconsin Law review*, 171.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 271-322.
- Tetlock, P. E., Peterson, R. S., & Lerner, M. J. (1996). Revising the value pluralism model : Incorporating social content and context postulates. In C. Seligman, J. Olson, & M. Zanna (Eds.), *Values : Eighth annual Ontario Symposium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25-51). Hillsdale, NJ : Erlbaum.
- Thomas, C., & Howard, R. (1977).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 punishment :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Behavioral Economics*, 6, 189-216.
- Tindale, R. S., Nadler, J., Krebel, A., & Davis, J. H. (2000). Procedural mechanisms and jury behavior. In M. A. Hogg & R. S. Tindale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 Group processes* (pp. 574-602). Malden, MA : Blackwell Publishers.
- Vidmar, N. (1974). Retributive and utilitarian motives and other correlates of Canadian attitudes toward the death penalty. *Canadian Psychologist*, 15, 337-356.
- Vidmar, N., & Ellsworth, P. (1974). Public opinion and the death penalty. *Stanford Law Review*, 26, 1245.
- Vidmar, N., & Miller, D. T. (1980).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underlying attitudes toward legal punishment. *Law and Society Review*, 14, 565-602.
- Walster, E. (1966).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an accid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72-79.
- Warr, M., Meier, R. F., & Erickson, M. L. (1983). Norms, theories of punishment, and publicly preferred penalties for crim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24, 75-91.
- Weiner, B. (1995). Judgements of responsibility :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Weiner, B., Graham, S., & Reyna, C. (1997). An attributional examination of retributive versus utilitarian philosophies of punishment. *Social Justice Research*, 10, 431-452.
- Ziming, F. E., & Hawkins, G. (1995). *Incapacita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Purpose of Punishment and Punitive Judgment: Impact of Retribution, General Deterrence, and Incapacitation**

**Hoon-Seok Choi**

**Eun Young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Three studies examined how different purposes of punishment affect peoples' punitive judgment. Korean college students assigned an appropriate sentence to a hypothetical perpetrator whose crime was varied with respect to the key components of three punishment purposes : retribution, general deterrence and incapacitation. Study 1 compared retribution and general deterrence purposes and showed that the sentence judgments were highly sensitive to retribution-related factors (magnitude of harm, extenuating circumstances, criminal intent) but were insensitive to factors associated with general deterrence (frequency, detection rate, publicity). Study 2 compared retribution and incapacitation purposes and revealed that both the retribution factors and incapacitation-related factors (criminal record, impulsiveness, recidivism) had a significant, but independent impact on sentence judgments. These findings were replicated in Study 3 which included all three punishment purposes in a single experimental design. Mediation analyses revealed that effects of the retribution factors were mediated by moral outrage. They also revealed that effects of the incapacitation factors were mediated by dispositional inference about the perpetrator and the perceived need for protecting the society from the perpetrator.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Purpose of punishment; Retribution; Utilitarianism; Incapacitation; Punitive judgment**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23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1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29일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부록1. 실험1에 사용된 범죄 사건 시나리오

공통 문장	폭행사건 : 피고인 □□□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를
	응보 고	응보 저
해 크기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으로 6개월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안면 비대칭, 감각장애, 치아부교합, 불안 등의 통상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안면 타박상, 흉부 타박상으로 2주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안면 비대칭, 감각장애, 치아부교합, 불안 등의 통상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씨와 이야기하던 중 무턱대고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씨와 이야기하던 중 ○○○씨가 □□□씨의 아이들을 욕박지르고 욕설을 퍼붓자 ○○○씨를 때렸다.
의도성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중에 ○○○씨를 위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중에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씨를 때렸다.
	일반인 제지 고	일반인 제지 저
발견율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목격자가 없으므로 발견되기 어려운 편이며, 이번 사건은 심야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발생하여 경찰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발견되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목격자가 있으므로 발견되기 쉬운 편이며, 이번 사건은 한낮에 인적이 많은 도로에서 발생하여 경찰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발견되기 쉬웠다.
주지율	피고인 □□□씨가 이 행위로 인하여 받은 처벌은 이 지역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 지역의 신문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 관한 기사를 거의 빼놓지 않고 실고 있다.	피고인 □□□씨가 이 행위로 인하여 받은 처벌은 이 지역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역의 신문들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 관한 기사를 거의 실지 않는다.
범죄 발생률	이런 종류의 범죄 행위는 총 범죄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또한 지난 수 년 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종류의 범죄 행위는 총 범죄 행위 중 낮은 비율을 차지하며, 또한 지난 수 년 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범죄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부록2. 실험2에 사용된 범죄 사건 시나리오

공통 문장	폭행사건 : 피고인 □□□씨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를
	응보 고	응보 저
해 크기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으로 6개월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밀 진단 결과 통상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씨는 안면 타박상, 흉부 타박상으로 2주 정도의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밀 진단 결과 통상적인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작할 만한 상황 요인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씨와 이야기하던 중 무턱대고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 ○○○씨와 이야기하던 중 ○○○씨가 □□□씨의 아이들을 욕박지르고 욕설을 퍼붓자 ○○○씨를 때렸다.
의도성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중에 ○○○씨를 위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씨를 때렸다.	피고인 □□□씨는 피해자 ○○○씨와의 말다툼 중에 자신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씨를 때렸다.
	무력화 고	무력화 저
범죄 전력	피고인 □□□씨는 이전에 폭행 혐의로 한 차례의 벌금형과 1회의 보호관찰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씨는 이전에 폭행 혐의로 단 한 차례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충동성	법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종합 성격검사(C-PAI) 결과, 피고인 □□□씨는 충동성 점수가 매우 높았다.	법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종합 성격검사(C-PAI) 결과, 피고인 □□□씨는 충동성 점수가 매우 낮았다.
재범가능성	범죄심리 전문가의 진단 결과, 피고인 □□□씨는 재범을 예측하는 특성 10개 요인 모두에서 매우 높은 점수가 나와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심리 전문가의 진단 결과, 피고인 □□□씨는 재범을 예측하는 특성 10개 요인 중 어느 요인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